

제공일자	2008. 6. 10(화)	담당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 진 억 선임(368-4413)	연락처	02-368-4411	총 2 매

제 목 :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보험 지급결제계좌, 특별계정과 자산위탁으로 해결해야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이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보고서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 겸업화시대에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지급결제수수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효과는 고객 계좌의 유치 실적에 따라 가변적일 뿐 아니라 전산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을 고려할 경우 불투명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자동이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가 납입되는 계좌의 10%를 보험회사 계좌로 유치하고 그 중 절반에서 3건의 자동이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지급결제수수료의 순절감액은 약 1/3(FY'05기준 770억원 중 2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회사 및 비예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할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① 금융결제원 직접 참여, ②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③ 비예금융동성 기반 서비스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산업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인 비예금유동성에 대해서 캐나다의 경우 거치연금을, EU의 경우 고유자산과 분리된 유동성 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EU방식이 결제리스크 통제에 보다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권간 구분과 결제리스크 통제가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징이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U방식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고객이 임의로 맡긴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EU와 같이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처리하되 추가로 해당 자산의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목적이 종합금융서비스 체제 구축에 있는 만큼 적어도 금융투자업에 허용된 자유로운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특별계정과 자산위탁을 활용하여 보험산업의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